

발송번호: 9-5-2024-079161815

발송일자: 2024.09.19.

제출기일: 2024.11.19.

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 원 인 성 명
주 소
대 리 인 성 명
주 소
황보의

출 원 번 호 40-2023-0153590
상 품 류 제 35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 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 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-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거절이유의 대상이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전부가 아닌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정상품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본 통지에 해당되지 않는 지정상품은 거절 대상 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에 출원공고 및 등록결정 됩니다(상표법 제57조제1항 및 제68조).
 -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란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기간(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을 날부터 3개월, 연장 가능)에 심판 또는 재심사의 청구가 없거나, 심판 또는 재심사

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판 또는 재심사가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.

2.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을 빠르게 상표등록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정서를 제출(상표법 제 40조 및 제41조)하거나 분할출원(상표법 제45조)을 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본 출원	인용	인용	인용
제4020230153590호	제4020220227794호	제4020753180000호	제4020230072562호
	EL DINERO	Catarsis del Dinero	Catarsis del Dinero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[거절이유 1]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(또는 유사)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는 보정(법 제40조)을 하거나 분할하여 출원하는 경우(법 제45조)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○ 선등록상표 제4020753180000호(Catarsis del Dinero)와 동일유사

(관련상품 : S2025 S2027 S2035 S2039 S2090)

- 거절 대상이 되는 상품 : [S2090]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[S2025] 가방 소매업, 지갑 소매업 [S2039] 노트북컴퓨터 소매업, 휴대폰 소매업 [S2035] 시계 소매업 [S2027] 신발 소매업

[거절이유 2] 상표법 제35조 제1항(또는 동법 제34조 제1항 제7호)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출원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(또는 동일)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출원 상표가 최종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아래 지정상품을 삭제하거나(법 제41조) 분할하여 출원(법 제45조)하는 경우, 또는 해당 선출원상표가 거절결정, 출원취하, 출원포기 또는 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1. 타인의 선출원 제4020220227794호(EL DINERO)와 동일유사 (관련상품 : S2090)

- 거절 대상이 되는 상품 : [S2090]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

